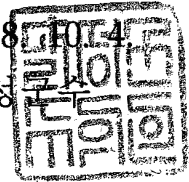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6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10. 4

제출자 : 달성군의회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(안 제5조)
 - 존속기한 : 2019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(5년)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)
- 다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: 2018. 9월
- 라. 입법예고 : 2018. 9월
- 마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
 - 2) 부패영향평가
 - 3) 성별영향평가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u>제5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</u> <u>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 <u>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</u> <u>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</u> <u>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</u> <u>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